

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·육아 우수기업 지원사업

직장 내 아이키움 배려문화의 민간 확산을 위한 「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·육아 우수기업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년 11월 4일

충청남도지사

I 사업 개요

- ☐ 신청기간: 2024. 11. 4.(월) ~ 12. 3.(화) 18:00 限
- ☐ 신청방법: 담당자 e-메일 온라인 접수
- ☐ 신청자격
 -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도내 소재한 상시 노동자 수 1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,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출산·육아 우수기업
 - * 여가부 주관의 가족친화인증기업도 신청가능, 다만 공공기관·공기관은 제외

< 지원 제외 대상 >

- ▶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명단 공개 사업장
- ▶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다만 신청일 이전 고용기준 충족 시 예외)
- ▶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·단체
- ▶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(다만 신청일 이전 의무 고용 충족 시 예외)
- ▶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
II 사업 절차

① 사업공고 및 신청(2024년)

- (신청기간) '24. 11. 4.(월) ~ 12. 3.(화) 18:00 限
- (신청방법) 담당자 e-메일 온라인 접수
 -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담당자 : speed4643@korea.kr
 - ※ 신청서 누락 방지를 위해 담당자에게 확인전화 必 041-635-4862

NO	제출서류	신청 방법
1	신청서(서명 날인 스캔 파일)	해당 파일 전자메일 접수
2	출산·육아 우수기업 추진실적 보고서	
3	개인정보 수집·제공·활용 동의서	
4	실적별 증빙자료(가점항목 포함)	
5	사업자등록증	
6	법인등기부등본	

② 참여사업장 선정

- (사전검토) 사업장별 결격사유 조회·확인(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)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(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즉시 보완 요청)
 - ※ 보완에 불응 또는 지정된 기한 내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
- (사업장 선정) 신청사업장의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(<붙임1> 평가항목별 배점 참고)
 - ※ 2025년 진행되는 현장 컨설팅(현장실사)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제외 가능
 - 현장의 다양한 출산·육아 우수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·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
- (선정공고) 서면심사 결과는 충청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, 협약 일정 및 현장실사 등 안내 사항은 사업장별로 안내

③ 업무협약 체결

- (협약일시) '24년 12월 中 실시(일정 추후 협의)
- (협약장소) 충남도청 대회의실
- (협약주체) ①충청남도지사, ②충남경제진흥원장, ③참여기업 대표
④아이키움 배려문화 전문가 그룹(노무사, 경영컨설팅 등)
- (협약내용) 도내 일가정양립 위한 출산·육아 배려문화 확산 노력

④ 아이키움 배려문화 컨설팅(현장실사)

- (대상) 업무협약 참여 50개 기업
- (방식)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일가정양립 수준 향상 유도 및 실사
 - 사전 제출자료의 현장 확인·검증
 - ①출산·육아 우수기업 신청서, ②실적보고서, ③증빙자료 등(기업DB 포함)
 - ※ 기업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 인터뷰(必), 제도 수혜자 인터뷰
 - 실사 결과 미진한 영역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진행
- (보고) 현장컨설팅단은 사업장별 '현장실사 결과 보고서'를 제출하되, 실사 사진 및 기타 특이 사항 등을 포함
- (선정 취소) 현장확인 결과 신청 당시 제출내용과 다른 경우는 허위 서류 제출로 선정 취소, 다음연도 사업 신청자격 제한

Ⅲ 지원 내용

① 장려금 지급

- (대상 기업 수 및 지원금액)
 - 우선, 출산·육아 우수기업에 50개 社 장려금 각 10백만원 지원
 - 다음으로, 우수기업 50개 社를 대상으로 주4일 출근제 도입·시행 기업 30개 社를 발굴하여 각 10백만원 추가 지급(최대 20백만원)

○ (지원금 확정)

-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 및 현장 컨설팅(현장실사) 결과보고 등을 종합하여 심사위원회 의결로 확정

① 우수기업 50개 社 : 기업당 지원금 10백만원

② 주4일 출근제 도입·시행 30개 社 : 지원금 10백만원 + 10백만원 추가 지원(총 20백만원)

- (용도제한) 사업장 내 일가정 양립 위한 제도·시설 개선 등에 사용
- (결과제출) 지정 사업장은 연도 내 장려금 사용 결과(회계처리 등)를 제출해야 하며 특정 사유 발생 시(미사용, 목적 외 사용) 환수 가능

② 기업인증 및 홍보 등

- (인증지원) 「출산·육아 우수기업」 인증서 및 인증 현판 제공
- (홍보지원) 道와 충남경제진흥원 누리집 게시, 충남청년포털 등 배너 연계 홍보, 홍보영상, 쇼츠 제작 및 도 SNS 활용 홍보
- (기타지원) '찾아가는 일자리 버스' 사업 연계 기업 홍보, 일가정 양립 관련 심화 컨설팅 제공 등

③ 사후 관리

- (유효기간) 일가정양립 위한 출산·육아 우수기업 인증 2년
- (지정취소) 결격사유·허위서류 제출 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, 또는 사회적 논란 또는 물의를 일으킨 경우
- (지원금 환수) 지정 후 1년 이내 취소 시 장려금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며 취소일로부터 2년간 신청 자격 제한
- (점검 방법) 수시 점검(필요시 현장 확인)

IV 향후 추진일정 [붙임3] 참조

< 2024년 >

- 11.04.(월)~12.03.(화) : 선정계획 공고 및 홍보·안내
- 12.04.(수)~12.06.(금) : 제출서류 심사 및 결과 공고
- 12월 中 : 충청남도-충남경제진흥원-참여기업 간 협약 체결

< 2025년 >

- 1월 中 : 현장컨설팅 계획 수립 및 안내
 - 현장 컨설팅 및 실사단 구성 병행
- 2.10.(월)~3.28.(금) : 현장 컨설팅 및 현장평가
- ~4.11.(금) : 심사위원회 의결로 장려금 지원 확정
- 8월~11월 : 주4일제 도입·활용 유지 기업 추가지원
- 11월~12월 :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

V 문의처

-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
 - ☎ 041) 635-4862
 - E-mail: speed4643@korea.kr
 - Fax: 041) 635-3051

붙임 1

선정기준

○ 총점 130점(㉠+㉡+㉢+㉣+㉤) +가점 10점

구분	평가항목	배점	평가지표
합계		130(10)	
정 량	㉠ 기업 분위기	10	5 - (A-1) 여성 근로자 비율
			5 - (A-2) 초등학생 이하 유자녀 근로자 비율
	㉡ 출산·육아 지원 인프라 구축	40	5 - (B-1) 난임 치료 지원제도 시행 여부
			5 - (B-2) 유산·사산 휴가 시행 여부
			5 - (B-3) 출산전후휴가 시행 여부
			5 - (B-4) 임신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여부
			5 - (B-5) 출산 지원제도 시행 여부
			5 - (B-6) 출산·육아 지원 편의시설 설치 여부
			5 - (B-7) 육아휴직 제도 시행 여부
			5 - (B-8) 육아휴직 복귀 시 적응 지원프로그램 시행 여부
	㉢ 출산·육아 지원 인프라 활용	40	10 - (C-1)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비율
			10 - (C-2)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비율
			10 - (C-3) 여성 육아휴직 활용 비율
			10 - (C-4) 남성 육아휴직 활용 비율
	㉣ 주 4일제 도입·활용	30	15 - (D-1) 주4일 출근제 시행 여부
			15 - (D-2) 주4일 출근제 활용 비율
정 성	㉤ 기타 노력	10	- (E) 일가정양립 및 출산·육아 우수기업을 위한 기타 노력(제도·문화)
가점	㉦	10	5 - (F-1) 정부·지자체 일가정양립 관련 우수기업 선정·수상(최근 3년)
			5 - (F-2) 정부·지자체 주관 일가정양립 사업참여 실적(최근 3년)

* 서류평가에 의해 고득점순으로 선발

출산·육아 우수기업 신청서(서식)

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·육아 우수기업 신청서

※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

(1) 신청구분		☐ 기업단위 ☐ 사업장단위		(2)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		
(3) 사업체명				(4) 사업개시일			
(5)-① 대 표 자				(5)-② 대표자 직책(직위)			
(6) 소 재 지		<본사> <사업장> ☐ 없음(본사동일)					
(7)-① 업종				(7)-② 주생산물/서비스			
(8)-① 총 자산	2022년	천원		(8)-② 연 매출액	2022년	천원	
	2023년	천원			2023년	천원	
(9)-① 상시 근로자 수		총 (명)		(9)-② 초등학생 이하 유자녀 근로자 수		(명)	
		男 명	女 명				
(10) 신청인	부서명			직책			
	성명			전자메일			
	전화			휴대전화			
(11) 결격사유 해당 여부 (최근 3년간)		① 임금체불 명단 공개 여부				☐ 예 ☐ 아니오	
		②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명단 공표 여부				☐ 예 ☐ 아니오	
		③ 납세의무 불이행 등 명단 공개 여부				☐ 예 ☐ 아니오	
		④ 장애인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여부				☐ 예 ☐ 아니오	
		⑤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여부				☐ 예 ☐ 아니오	
		⑥ 신청일 기준 출산·육아 관련 제도의 활용 여부				☐ 예 ☐ 아니오	

「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·육아 우수기업」 선정 참여를 신청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: _____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
충청남도지사 귀하

첨부 서류	1. 신청서 원본(대표 직인), 2. 출산·육아 우수 추진실적 보고서, 3. 개인정보 수집·제공·활용 동의서, 4. 실적별 증빙자료(가점 항목포함), 5. 사업자등록증, 6. 법인등기부등본
----------	---

신청서 작성요령

- (1) 신청구분: 기업단위(본사 포함 전체) 또는 사업장단위(공장, 지사 등) 여부, 가능한 기업(법인) 단위 신청을 권장
- (2)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, 기업단위는 본사, 사업장 단위는 당해 사업장 기준으로 기업
- (3) 사업체명: 기업단위는 본사, 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 명칭(사업자등록증에 기입된 명칭)
- (4) 사업개시일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입(합병에 따른 사업승계는 그 이전 사업개시일 기입)
- (5)-①~② 대표자(직책): 기업단위는 본사, 사업장 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주의 성명 및 직책·직위 기재
- (6) 소재지: 기업단위는 본사 주소만 기재하고, 사업장 단위는 본사 및 사업장 주소 모두 기재
- (7)-①~② 업종 및 주생산품/서비스: 신청기업의 사업종류 및 산출물 기입(다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업종 중심으로 기재)
- (8)-①~② 총자산 및 연 매출액: 해당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작성
- (9)-① 근로자수: 직전년도 말일("23.12.31.") 기준 근로자 수(사업장 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수)
- (9)-② 초등학교 이하 유자녀 근로자 수: 직전년도 말일("23.12.31.") 기준 전체 근로자(남녀포함) 중 유자녀 근로자 수 기재
- (10) 신청인: '2024년 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·육아 우수기업' 선정 신청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 사항 기재
- (11) 결격사유 해당 여부: '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·육아 우수기업' 선정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입

첨 부

제출서류 목록

번호	자료항목	제출서류	제출방법
■ 신청서류			
1	신청	신청서(서명 날인 스캔 파일)	전자메일 제출
2		출산·육아 우수 추진실적 보고서	
3		개인정보 수집·제공·활용 동의서	
4		실적별 증빙자료(가점항목 포함)	
5		사업자등록증	
6		법인등기부등본	
↳ ★ 실적별 증빙자료(상세)			
A-1	정량	< 여성 근로자 비율 > → 직원 명부 등	항목별로 파일을 압축하여 전자메일로 제출 ※ 파일명: 번호/자료항목/ 제출서류 순 기재 (예시) D-1/ 4일 출근제 시행 여부/ 단체협약
A-2		< 초등학교 이하 유자녀 근로자 비율 > → 직원 명부 등	
B-1		< 난임 치료 지원제도 시행 여부 > → 제도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규정, 단체협약, 취업규칙, 시행문 등	
B-2		< 유산·사산 휴가 시행 여부 > → 제도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규정, 단체협약, 취업규칙, 시행문 등	
B-3		< 출산전후휴가 시행 여부 > → 제도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규정, 단체협약, 취업규칙, 시행문 등	
B-4		< 임신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여부 > → 제도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규정, 단체협약, 취업규칙, 시행문 등	
B-5		< 출산 지원제도 시행 여부 > → 제도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규정, 단체협약, 취업규칙, 시행문 등	
B-6		< 출산·육아 지원 편의시설 설치 여부 > → 영업신고증, 위탁시 계약서 ※ 현장실사 시 확인	
B-7		< 육아휴직 제도 시행 여부 > → 제도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규정, 단체협약, 취업규칙, 시행문 등	
B-8		< 유아휴직 복귀 시 적응 지원프로그램 시행 여부 > → 제도 운영에 대한 내부 시행문, 사용 가이드(매뉴얼), 직원 사용 현황, 규정·기준,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내부 공식 문서 등	

C-1		<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비율 > → 전자·기계적 방식의 근태 확인 자료 ※ 현장실사 시 특정 근로자에 대한 근태자료 요구할 수 있음	
C-2		<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비율 > → 전자·기계적 방식의 근태 확인 자료 ※ 현장실사 시 특정 근로자에 대한 근태자료 요구할 수 있음	
C-3		< 여성 육아휴직 활용 비율 > → 근로자별 육아휴직 사용 승인 내부 문서	
C-4		< 남성 육아휴직 활용 비율 > → 근로자별 육아휴직 사용 승인 내부 문서	
D-1		< 4일 출근제 시행 여부 > → 제도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규정, 단체협약, 취업규칙, 시행문 등	
D-2		< 4일 출근제 활용 비율 > → 근로자별 4일 출근제 사용 승인 내부 문서 → 전자·기계적 방식의 근태 확인 자료 ※ 현장실사 시 특정 근로자에 대한 근태자료 요구할 수 있음	
E	정성	< 일가정양립 및 출산·육아 우수기업을 위한 기타 노력(제도·문화) > → 항목별 제도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규정, 단체협약, 취업규칙, 시행문 등 ※ 현장실사 시 특정 근로자에 대한 근태자료 요구할 수 있음	
F-1	가점	< 정부·지자체 일가정양립 관련 우수기업 선정·수상(최근 3년) > → 우수기업 인증·선정서 또는 인증패(사진) ※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 포함	
F-2		< 정부·지자체 주관 일가정양립 사업참여 실적(최근 3년) > → 참여 확인을 위한 사업참여 확인서 또는 내부 문서, 행사 현장 사진 등	

※ 상기 외 실적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·육아 우수기업 추진실적 보고서

○ ○ ○ 사

1. 정량지표

평가항목	배점						
A-1. 여성 근로자 비율	5						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 수 (A)</th> <th>사업장 내 여성 근로자 수 (B)</th> <th>사업장내 여성 근로자 비율 (B/A) × 100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_____명</td> <td>_____명</td> <td>_____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 수 (A)	사업장 내 여성 근로자 수 (B)	사업장내 여성 근로자 비율 (B/A) × 100	_____명	_____명	_____%	
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 수 (A)	사업장 내 여성 근로자 수 (B)	사업장내 여성 근로자 비율 (B/A) × 100					
_____명	_____명	_____%					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여성 근로자 수로 계산 - 2023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제외(A, B 모두 제외)							

평가항목		배점
A-2. 초등학생 이하 유자녀 근로자 비율		5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		
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 수 (A) _____명	사업장 내 초등학교 이하 유자녀 근로자 수 (B) _____명	사업장내 초등학교 이하 유자녀 근로자 비율 (B/A) × 100 _____%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유자녀 근로자 수로 계산 - 2023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제외(A, B 모두 제외)		

평가항목				배점
B-1. 난임 치료 지원제도 시행 여부				5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				
구분(지원유형)	추진 실적			
난임 치료 지원제도 도입 및 시행 여부	법정 난임치료휴가 시행		☐	
	난임치료휴가 유급 시행		☐	
	비용지원	진단비 지원	☐	(천원)
		시술비 지원	☐	(천원)
		기타	()	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법정 난임휴가는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에 근거한 3일의 휴가(최초 1일 유급, 2일 무급)를 의미하며 유급 시행은 최초 1일 외 나머지 2일에 대한 사업주의 추가 유급 지원을 의미함 - 비용지원은 난임치료 휴가 외 사업주의 진단비, 시술비, 기타 지원(기술 요)을 의미함				

평가항목			배점
B-2. 유산·사산 휴가 시행 여부			5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			
구분(지원유형)	추진 실적		
유산·사산 휴가 시행 여부	법정 유·사산 휴가 시행	☐	
	유·사산 휴가 기간 확대 시행	☐	
	유사산 휴가 비용지원	☐	(천원)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법정 유·사산휴가는 「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」에 근거한 유급휴가를 의미하며 기간 확대 시행은 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」의 법정 휴가 기간*을 상회하는 사용자 추가 지원을 의미함 - 비용지원은 여성 근로자의 유·사산 시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위로금 등의 혜택을 의미 * 유·사산 휴가 기간 1. 임신기간이 11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.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			

평가항목			배점
B-3. 출산전후휴가 시행 여부			5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			
구분(지원유형)	추진 실적		
출산전후휴가 시행 여부	법정 출산전후휴가 시행		☐
	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시행		☐
	유급시행	법정기간	☐
		전 기간	☐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법정 출산전후휴가는 「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」에 근거한 9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휴가를 의미함 - 기간 확대 시행은 법정 지원기간 90일(또는 100~120일)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추가지원을 의미함 - 유급 시행은 「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」에 따른 6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의 기본 유급지원기간 외에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추가 유급 지원을 의미함 ex) 90일 전 기간 유급 지원			

평가항목		배점
B-4. 임신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여부		5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		
구분(지원유형)	추진 실적	
임신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·시행 여부	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	☐
	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	☐
	법정 임산부 출퇴근 시간 변경	☐
	임신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(시간) 확대 적용	☐
	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급 지원	☐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「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」에 근거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의미함 -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」에 근거한 1년 이내의 근로시간 단축을 의미함(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) - 법정 임산부 출퇴근 시간 변경은 「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」에 근거하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- 임신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적용은 적용 기간 및 시간의 확대를 모두 포함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급 지원은 법의 범위(무급)를 초과하는 사용자의 비용지원을 의미함		

평가항목				배점
B-5. 출산 지원제도 시행 여부				5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				
구분(지원유형)	추진 실적			
출산 지원제도 도입·시행 여부	법정 배우자 출산휴가		☐	
	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실시		☐	
	출산 비용지원	출산장려금	☐	(천원)
		양육지원금	☐	(천원)
		기타	()	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는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」에 따른 10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하고 출산휴가 확대는 10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사용자가 부여하는 휴가 기간의 연장을 의미함 - 출산 비용지원은 출산장려금, 양육지원금, 기타 지원(기술 요)을 포함				

평가항목		배점
B-6. 출산·육아 지원 편의시설 설치 여부		5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		
구분(지원유형)	추진 실적	
출산·육아 지원 편의시설 설치 여부	여성휴게실	☐
	산모휴게실	☐
	수유실	☐
	직장어린이 집	☐
	기타	()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직장어린이 집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」 및 「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0조」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·탁아 등 육아를 위해 설치한 어린이집을 의미하며 단독, 공동, 위탁 운영 모두 인정 *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설치 必 - 기타 여성휴게실, 산모휴게실, 수유실 등은 법적 설치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·운영 중인 사내·외 시설을 의미함		

평가항목		배점										
B-7. 육아휴직 제도 시행 여부		5										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(지원유형)</th> <th colspan="2">추진 실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육아휴직 제도 시행 여부</td> <td>법정 육아휴직</td> <td>☐</td> </tr> <tr> <td>육아휴직 기간 확대 실시</td> <td>☐</td> </tr> <tr> <td>육아휴직 유급 실시</td> <td>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분(지원유형)	추진 실적		육아휴직 제도 시행 여부	법정 육아휴직	☐	육아휴직 기간 확대 실시	☐	육아휴직 유급 실시	☐
구분(지원유형)	추진 실적											
육아휴직 제도 시행 여부	법정 육아휴직	☐										
	육아휴직 기간 확대 실시	☐										
	육아휴직 유급 실시	☐										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법정 육아휴직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」에 근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른 1년 이내의 휴가를 의미함 - 육아휴직 기간 확대 실시는 상기한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시혜적 기간 연장을 의미함 - 육아휴직 유급실시는 「고용보험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」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(통상임금의 80%로서 상한 150만원, 하한 월 70만원)와 별도로 사용자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지원을 의미함												

평가항목		배점
B-8. 육아휴직 복귀 시 적응 지원프로그램 시행 여부		5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		
구분(지원유형)	추진 실적	
육아휴직 복귀 시 적응 지원프로그램 시행 여부	복귀지원 교육	☐
	직무 연수	☐
	기타	()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육아휴직 복귀 시 적응 지원프로그램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원하는 복귀지원 교육 및 직무 연수 등 사내·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함(기타의 경우 기술 요함)		
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

구분(지원유형)	추진 실적	
육아휴직 복귀 시 적응 지원프로그램 시행 여부	복귀지원 교육	☐
	직무 연수	☐
	기타	()

※ 작성 시 참고사항

- 육아휴직 복귀 시 적응 지원프로그램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원하는 복귀지원 교육 및 직무 연수 등 사내·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함(기타의 경우 기술 요함)

평가항목		배점
C-1.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비율		10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		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수 (A)	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여성 근로자 수 (B)	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률 (B/A) × 100
_____명	_____명	_____%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 사업장 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수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여성 근로자 수로 계산 - 2023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제외(A, B 모두 제외)		

평가항목		배점
C-2.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비율		10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		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 수 (A)	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남성 근로자 수 (B)	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률 (B/A) × 100
_____명	_____명	_____%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 사업장 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 수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남성 근로자 수로 계산 - 2023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제외(A, B 모두 제외)		

평가항목		배점
C-3. 여성 육아휴직 활용 비율		10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		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수 (A)	육아휴직 사용 여성 근로자 수 (B)	여성 육아휴직제도 활용률 (B/A) × 100
_____명	_____명	_____%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 사업장 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 여성 근로자 수로 계산 - 2023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제외(A, B 모두 제외)		

평가항목		배점
C-4. 남성 육아휴직 활용 비율		10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		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 수 (A)	육아휴직 사용 남성 근로자 수 (B)	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용률 (B/A) × 100
_____명	_____명	_____%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 사업장 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 남성 근로자 수로 계산 - 2023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제외(A, B 모두 제외)		

평가항목				배점
D-1. 주4일 출근제 시행 여부				15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				
구분(지원유형)	추진 실적			
주4일 출근제 시행 여부	주 4일 출근제	재택근무형	☐	
		집약근무형	☐	
		4일근무형	☐	
	주 4.5일 출근제		☐	
	주 4일 출근제 도입(예정)		☐	
		예정 시기	(년, 월)	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'주4일 출근제'는 아래의 3개 유형을 모두 포함 ❶ (재택근무형) 월~금 중 1일을 선택하여 재택근무 ❷ (집약근무형) 4일간 하루 10시간씩 근무 후 월~금 중 1일을 선택하여 휴무 ❸ (4일 근무형) 4일간 하루 8시간씩 근무 후 월~금 중 1일을 선택 또는 지정된 날짜에 휴무 - '주4.5일 출근제'는 월~금 중 1일을 지정하여 4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 - '주4일 출근제 도입(예정)'은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장래에 시행 계획이 있는 경우 표기				

평가항목		배점
D-2. 주4일 출근제 활용 비율		15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~ 2023년 12월)		
만 2세(35개월) 이하의 자녀를 둔 실 근로자 수 (A)	주4일 출근제 활용 근로자 수 (B)	주4일 출근제 활용률 (B/A) × 100
_____명	_____명	_____%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 사업장 내 만 2세(35개월) 이하의 자녀를 둔 실 근로자 수 대비 주4일 출근제 활용 근로자 수로 계산 - 2023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제외(A, B 모두 제외)		

2. 정성지표

평가항목	배점
E. 일가정양립 및 출산·육아 우수기업을 위한 기타 노력(제도·문화)	10
○ 배경 및 목적 - - ○ 추진 현황 - - ○ 추진 효과 - -	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하단의 예시 항목 중 시행하고 내용이 있으면 제도의 개요 및 운영현황과 효과 등에 대해 기재(분량은 2p 내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제출 必) - 2024년도 출산·육아 지원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실적 있다면 정성지표(E)에 추가	
① 법정 육아지원제도 초과 부여 등 ② 사내 각종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③ 기타 육아지원 홍보·분위기 조성 노력 등 ④ 유연근무 확대 노력 ⑤ 규정 마련 통한 제도화 ⑥ 유연근무 인프라 도입 ⑦ 기타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신설·운영 등 ⑧ 정시퇴근 관리체계 운영 ⑨ 기타 초과근무 감축 노력 등 ⑩ 연차휴가 사용 촉진 노력 ⑪ 가족돌봄휴가(휴직) 제도 운영 ⑫ 기타 법정 외 휴가제도 신설·운영	

3. 가점

평가항목			배점
F-1. 정부·지자체 일가정양립 관련 우수기업 선정·수상(최근 3년)			5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~ 2023년 12월)			
NO	추진 실적		
	수상 및 인증획득 명	수상(인증) 일자	주관
1			
2			
3			
4			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중앙정부 또는 충청남도(유관기관 포함)에서 시행하는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선정·수상 모두 포함 - 여성가족부 주관 '가족친화인증' 사업장 포함			

평가항목			배점
F-2. 정부·지자체 주관 일가정양립 사업참여 실적(최근 3년)			5
○ 운영실적(2023년 1월 ~ 2023년 12월)			
NO	추진 실적		
	일가정양립 참여 사업명	사업 참여 일자	주관
1			
2			
3			
4			
※ 작성 시 참고사항 - 중앙정부 또는 충청남도(유관기관 포함)에서 시행하는 일가정양립 관련 사업참여 실적 모두 포함			

<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>

본 신청기업은 「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·육아 우수기업 지원사업」의 원활한 수
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
제공하고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○ 개인정보 수집목적

- 지원사업의 심사·선정, 평가 관련 안내, 사업실적(정산-원천징수 및 통계자료)관리, 기타 사업 홍보(진흥원 홈페이지, 보도자료,진흥원 홍보물 등)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에만 이용

○ 개인정보 수집항목

- 기업 : 기업대표, 기업현황, 경영현황
- 개인 :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 성명, 연락처, 이메일 등

○ 개인정보 이용방법

-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인력 정보 및 관련 자료는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업무 처리 시에만 사용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5년(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)

<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 >

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

필수항목 : (동의함 ☐ 동의하지않음 ☐) 선택항목 : (동의함 ☐ 동의하지않음 ☐)

※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

2024년 아 유

성명 : (서명 또는 날인)